

#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09월 0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세대주 성명 | 성명<br>생년월일        | 주 소                 | 지연 신고사항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박**    | 박**<br>1965-01-23 |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34번길   | 무단전출    |
| 홍**    | 홍**<br>1985-02-13 |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   | 무단전출    |
| 노**    | 노**<br>1983-10-30 |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85번5길 | 무단전출    |
| 김**    | 김**<br>1965-01-20 |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      | 무단전출    |
| 김**    | 심**<br>1964-07-02 |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      | 무단전출    |
| 김**    | 김**<br>1987-04-18 |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      | 무단전출    |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 담당자 : 박 상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문의전화 : 032-560-3351 )

2015년 08월 24일

검단4동장 인

